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기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241

발의연월일: 2024. 7. 25.

발 의 자:송기헌·조 국·김영배

허 영・정성호・이소영

김태년 • 주철현 • 민병덕

정일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의 노출 콘크리트를 비롯한 미건축 공사 자재들은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인근 거주민의 건 강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음.

그러나 「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의거해 실시되는 실태조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이 환경 또는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관한 조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그 어떤 법에서도 이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.

이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환경 및 인체 유해성에 관한 조사 규정 및 그 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명령을 건축주에게 내릴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의 장기방치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전하고자 함(안 제45조의4 신설).

법률 제 호
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에 제4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5조의4(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유해성 조사) ① 환경부장관은 「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중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확인된 건축물(이하 이 조에서 "장기방치 건축물"이라 한다)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환경 및 인체 유해성에 관한 조사(이하 이 조에서 "유해성 조사"라 한다)를 실시하여야 한다.

-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장기방치 건축물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제16조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건축주에게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.
- ③ 환경부장관은 장기방치 건축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.
- ④ 유해성 조사의 실시 시기, 조사 방법·범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렁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신 설></u>	제45조의4(공사중단 장기방치 건
	축물 유해성 조사) ① 환경부
	<u>장관은 「공사중단 장기방치</u>
	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
	조치법」에 따른 공사중단 건
	축물 중 같은 법 제4조에 따른
	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사를 중
	단한 총 기간이 10년 이상으로
	확인된 건축물(이하 이 조에서
	"장기방치 건축물"이라 한다)에
	대하여 정기적으로 환경 및 인
	체 유해성에 관한 조사(이하
	이 조에서 "유해성 조사"라 한
	다)를 실시하여야 한다.
	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
	조사 결과 장기방치 건축물이
	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제16
	조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허
	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건축
	주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
	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	③ 환경부장관은 장기방치 건
	축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제16조

에 따른 배출허용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.

④ 유해성 조사의 실시 시기, 조사 방법·범위 등 조사에 필 요한 사항은 환경부렁으로 정 한다.